

1. 개정이유

지난 ‘20/’21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도출된 방역상 취약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기준을 보완하며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한 차량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 (안 제9의2 및 별지 제1호의15)

- 1) 현행 규정상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미흡한 소독설비나 방역시설이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하지 않고 미흡한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결과를 통보하는 사례가 있는 등 개선 필요
- 2)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조치 후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개선

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 강화 (별표1의10)

- 1) ‘20/’21년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도출된 방역상 취약점의 개선을 위해 가금 사육사육농가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할 필요

- 2) 10만마리 이상 사육 산란계 농가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닭·오리 사육업에서 모든 가금 사육업으로 확대하며, 소규모 농가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강화된 방역기준을 설정함

다.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임차한 차량의 시설출입차량 등록 의무 부여(안 별표 2의2)

- 1)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승용·승합차는 축산시설 출입 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장을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
- 2)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 영업 종사자 등이 소유·임차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도록 함

* 농장외부 주차시설에 주차하거나 농장내로 통하는 별도 출입구를 가진 주차시설에 주차하는 차량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부득이 농장내로 일시적 진입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 받고 진입하며 외부주차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지자체장이 인정시 농장내부 구획된 주차시설 설치가능

라.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강화 (별표 2의4 개정)

- 1) ‘20/’21년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분석을 통해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기준을 보완할 필요
- 2) 가금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분뇨 운송벨트와 벨트 주변에 야생동물

접근 방지하고, 주변바닥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명확한 방역기준을 설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12~ 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실시하고,”를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 방역기준 준수를 위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없이 계약사육농가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개선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별지 제1호의15에 따른”으로, “점검이 각각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 및 점검 결과를”을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로 한다.

별표 1의10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1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터널식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소독시설 이외에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추가 소독 실시 여부를 영상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차량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전단 기준에도 불구하고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차량의 진입로 또는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거나 그 밖의 사유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제2호 개별기준은 각 목의 업종별로 구비하여야 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1의10 제2호가목(1) 중 “소독시설”을 “소독설비”로 하고, 같은 목 (2) 중 “소독시설”을 “소독설비”로 하고, 같은 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금(닭,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 사육업

별표 1의10 제2호가목(3) 중 “소독시설”을 “소독설비”로 하고, 같은 란 (가) 중 “차량”을 “각 차량”으로, “소독”을 “세척·소독”으로, “장치”를 “고압분무기”로 하며, 같은 (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 또는 분무용소독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의10 제2호가목(3)의 소독설비(종전의 소독시설)에 (나) 중 “출입구,”를 “각 출입구,”로 하고, 같은 란 (다) 중 “출입구”를 “각 출입구”로,

“고압분무기”를 “소독장비”로 하며, 같은 란 (라) 중 “출입기록부”를 “농장의 각 출입구별 출입기록부”로 하고, 같은 란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마) 중 “방문차량”을 “농장의 각 차량 출입구별 방문차량”으로 하고, 같은 (3)의 방역시설에 (가) 본문 중 “출입구”를 “각 출입구”로 하며, 같은 란 (나) 중 “농장 입구”를 “농장의 각 출입구”로 하고, 같은 란 (다) 본문 중 “설치하되,”를 “설치하되, 각”으로 하며, 같은 (다) 단서 중 “등 출입을”을 “등으로 사람, 차량의 출입을 완전히”로, “자연경계를 갖춘”을 “자연경계인”으로 하고, 같은 란 (바) 단서를 삭제한다.

(바) 농장 밖 별도의 식용란 상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식용란 상차장에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별표 1의10 제2호가목(3)의 방역시설에 1) 본문 중 “닭·오리를”을 “가금”으로, “축사 입구”를 “사육시설 출입구”로 하고, 같은 1)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란 2) 본문 중 “기후”를 “기상여건”으로, “실내”를 “축사 실내와 연결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닭·오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으로 하고, 같은 2)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란에 3)부터 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사) 중 “닭·오리”를 “가금”으로, “배수구”를 “배수구, 퇴비장, 왕겨창고”로 한다.

- 3) 출입 시 반드시 신발을 갈아 신도록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을 전실 내부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에 설치할 것
- 4)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각각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 매트를 설치할 것

5)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소독제 또는 일회용 장갑을 구비할 것

6) 전실 밖에서 외부 신발을 벗고, 전실 입구에서 내부 신발로 갈아신고 입장하여 전실에서 사육시설 진입 시 사육시설 입구에서 전용 신발 또는 1회용 덧신으로 다시 갈아신는 경우에는 3)호의 설비를 구비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의10 제2호가목(3)의 방역시설에 (사)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비장의 분뇨차량 출입구로서 방조망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개폐식 차단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의10 제2호가목(3)의 방역시설에 (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아) 중 “출입구와 각”을 “출입구, 방역실 출입구, 각 사육시설의 출입구(부출입구를 포함한다)와”로, “임상증상 등에 관한”을 “임상증상, 출입자의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자)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분뇨 운송벨트 및 해당 벨트와 연결된 사육시설 및 집란실의 접합부 등에 야생동물 차단을 위한 덮개 또는 차단망 등을 설치할 것

별표 1의10 제2호가목(3)의 방역시설에 (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시설·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인근 시설·장소의 영상기록까지 동시에 저장·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근 시설·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 1의10 제2호나목,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 같은 호 마목, 같은 호 바목, 같은 호 사목, 같은 호 아목(1) 및 같은 목 (2) 중 “소독시설”을 각각 “소독설비”로 하고, 같은 (2)의 방역시설에 (나) 단서 중 “등 출입을”을 “등으로 사람, 차량의 출입을 완전히”로, “자연경계를 갖춘”을 “자연경계인”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소독시설”을 “소독설비”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소독시설”을 “소독설비”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의 방역시설에 (2) 단서 중 “등 출입을”을 “등으로 사람, 차량의 출입을 완전히”로, “자연경계를 갖춘”을 “자연경계인”으로 하고, 같은 란 (8) 중 “임상증상”을 “임상증상, 부화용 알 및 난좌 소독실시”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소독시설”을 “소독설비”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금의 소유자등

소독설비	가. 분무용 소독장비를 갖추는 것 나.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방역시설	가. 사람, 동물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사육시설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의 외벽이 야생동물 등의 충돌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거나,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무창, 이중망 등)한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나. 야생조류와 접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사육시설에 방조망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자체가 야생조류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방조망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 1의10 비고 중 “소독시설 외”를 “소독설비 외”로, 같은 비고 중 “소독시설과”를 “소독설비와”로, 같은 비고 중 “소독시설을”을 “소독설비를”로 한다.

별표 2의2 제19호 등록대상 차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 또는 축산관련 영업 종사자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다만, 농장외부 주차시설에 주차하거나 농장내로 통하는 별도 출입구를 가진 주차시설에 주차하는 차량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부득이하게 농장내로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 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거친 후에 농장내로 진입할 수 있고, 농장 구조상 외부에 주차시설 마련이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장 내부의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구획된 공간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의4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카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종전의 라목) 중 “청소·소독하여야 한다”를 “청소·소독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파목(종전의 차목) 중 “출하를 준수해야 하며,”를 “출하, 출하 후”로,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아야”를 “준수해야”로 한다.

마. 가금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분뇨 운송벨트와 해당 벨트 주변에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 바닥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한다.

다.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은 알을 취급할 때 1회용 난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난좌 세척·소독 시설을 구비·운영하고 세척·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영상기록을 촬영일로부터 1개월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알의 운반 또는 취급에 사용되는 합판·파레트 등은 사용할 때마다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새로 구입하거나 회수된 합판·파레트 등은 사육시설로 반입하기 전에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마. 가축 사육시 사용하는 기자재, 소모품 등은 농장내 외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별표 1의10의 기준에 따른 물품반입창고(시설) 또는 외부와 차단된 실내공간(오염 방지 목적에 적합한 덮개 포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바. 가금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각 출입구, 각 방역실 출입구, 각 사육시설의 출입구(부출입구를 포함한다) 및 내부에는 출입자의 방역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이 가능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영상기록은 촬영일부터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인근 시설·장소의 영상기록까지 동시에 저장·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근 시설·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 2의4 제4호과목(종전의 차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및 법 제19조 제1항제6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에는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별표 2의4 제4호에 하목과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가금 사육업자는 위반한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을 보완한 후에 해당 가금을 입식하여야 한다.

너. 각 소독설비는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소독이 가능하도록 동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의15서식 부터 별지 제1호의1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호의16서식 부터 별지 제1호의20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의1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약사육농가 교육 및 점검결과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점검자	축산계열화사업자명		점검자명
	전화번호		
	주소		
교육 내용			
점검 내용	점검한 가축의 종류 돼지[], 닭[], 오리[], 염소[], 혼합[]		
	현재의 가축사육 규모		
	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동, m²	사육 형태 축사[], 방목[], 축사 및 방목 혼합[]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계약사육농가만 해당)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소독설비[], 방역시설[], 정상 작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검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서류	1. 계약사육농가 점검표 1부.	수수료 없음
	2.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전, 후 사진 1부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위 신고인은 개인정보와 농장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의 이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통 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80g/㎡)]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 농가 점검결과표

☐ 농장명(축주) : ☐ 주소(연락처) :

○ 돼지, 염소

축종	동	사육두수	폐사율(수)	형태 (돼지:개방식/무창식) (염소: 축사/방목)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
				여 / 부	여()명 / 부

○ 가금류

축종	동	사육두수	폐사율(수)	산란율 (산란가금)	형태 (평사/케이지)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
					여 / 부	여()명 / 부

☐ 점검사항

구분	점검사항	점검 결과	제출 사진	비고
농장 입구 사립/ 차량 소독시설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여/부	첨부	
	대인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출입통제 시설	차량 진입 차단장치(차단바, 줄 등) 설치 여부			
	- 출입구가 닫혀 있는지 여부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여부			
울타리·담장	농장 울타리(담장) 설치 여부			
방역실	농장 입구에 방역실 설치 여부			
	- 대인 소독, 신발 소독을 위한 설비 구비 여부			
	- 출입자가 착용할 작업복·신발·장갑 등 구비 여부			
전실	축사 입구에 전실 설치 여부			
	* 사육시설이 한 동만 있는 경우 방역실로 대체 가능			
	- 신발소독조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되어 있는지 여부			
	- 축사 전용 장화와 손 소독(세척) 시설 구비 여부			
차단망(그물망)	사육시설과 환풍구, 배수구 등에 차단망 설치 여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및 방역수칙 교육 여부			
기타 방역수칙	축사 노후화 등으로 구멍난 곳은 없는지 여부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트랙터 등 농기계와 농기구의 농장 내 진입(반입) 금지 * 부득이한 경우 철저히 세척·소독 후 반입하되 축사 인근에 보관 금지			
	사료빈과 퇴비사 주변 청결 유지 및 소독			
	축사 진입 전 손 씻기와 신발(장화) 갈아신기			
	농장 주변 물웅덩이 제거			
	구서·구충작업			

☐ 미비사항 등 개선조치 내역

○ 미비사항 :

○ 개선사항(개선일자)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u>실시하고, 교육 및 점검이 각각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 및 점검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제9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① ----- ----- ----- ----- ----- ----- ----- ----- <u>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 방역기준 준수를 위한 소독 설비 및 방역시설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없이 계약사육농가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개선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별지 제1호의15에 따른 ---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u>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